

審 查 報 告 書

2001. 6. 2
총무 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1. 5. 25.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2001. 5. 26
- 라. 상정일자 : 2001. 6. 2

2. 提 案 說 明 要 旨 (提 案 說 明 : 自 治 行 政 課 長 崔 鎮 珪)

가. 改 正 理 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9급 정원 2명을 증원 승인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임.

나. 主 要 骨 子

-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29명”에서 “83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14명”을 “816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99. 8. 25 개정, 조례제305호) 부칙 제2조의 “표2”중 정원의 총수 “857명”을 “85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42명”을 “844명”으로 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보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시 본청 또는 읍면동에 두어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9급 정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회복지직 확대배치 지침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20조가 정한 규정에 따라 2001. 5. 2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원 승인된바 있어
- 본 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읍·면·동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 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적합하며 원안대로 개정하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3
----------	-----

제출년월일 : 2001. . .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9급 정원 2명을 승인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29명”에서 “83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14명”을 “816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표 2중 정원의 총수 “857명”을 “85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42명”을 “844명”으로 함.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제15조
 - 충청남도 행정 12200-1177(2001.5.7)호 :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지침

○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현황

직 명	정 원	비 고
지방사회복지서기보	2명	

○ 정원 증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지도	기능	별정무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정 원	857	657	1	5	41	154	239	172	45	33	141	26
(사회복지 정 원)	16	16					6	5	5			
조 정 정 원	859	659	1	5	41	154	239	172	47	33	141	26
(사회복지 정 원)	18	18					6	5	7			
증 감	+2	+2							+2			

○ 생활보호대상 가구 및 대상자수

(단위 : 가구, 명)

구 분	계	대산	인지	부식	판봉	지곡	성연	음압	운산	해미	고북	부춘	동문	활성	수석	석남
생 보 가	2,422	102	116	173	129	82	94	147	200	186	139	233	174	139	390	118
생보자	5,132	208	273	432	292	156	183	294	418	377	279	536	337	287	834	226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중 “829명”을 “831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814명”을 “816명”으로 한다.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표 2의 정원의 총수 및 1. 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5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844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29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814명</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831명----- -----</p> <p>1. ----- : 816명</p> <p>2. (현행과 같음)</p>												
<p>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조례 제305호) 부칙</p>	<p>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조례 제305호) 부칙</p>												
<p>제2조(정수에 관한 적용례)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p>	<p>제2조(정수에 관한 적용례)----- ----- ----- -----</p>												
<p>[표 1] (생략)</p> <p>[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원의 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857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42명 (생략)</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5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842명 (생략)	<p>[표 1] (현행과 같음)</p> <p>[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원의 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859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44명 (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5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844명 (현행과 같음)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5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842명 (생략)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5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844명 (현행과 같음)												

심 사 보 고 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 6.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1. 5. 23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2001. 5. 30
- 라. 심사기간 : 2001. 5. 31 ~ 6. 1

2. 예산의 규모 및 특징

가.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212,613,598	212,613,598
일 반 회 계	186,410,615	186,410,615
특 별 회 계	26,202,983	26,202,983

나. 특 징

-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 2,126억 1,359억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925억 3,623만 3천원보다 200억 7,736만 5천원인 10.4%가 증액되었는데

○ 회계별 규모는

- 일반회계가 1,864억 1,06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89억 8,678만 7천원보다 174억 2,382만 8천원인 10.3%가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262억 2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5억 4,944만 6천원보다 26억 5,353만 7천원인 11.3%가 증액되었음.

○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8%, 특별회계가 12%로 구성되어 있음.

3. 예산의 주요문제점

- 없음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총 요구액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212,613,598	212,613,598
일 반 회 계	186,410,615	186,410,615
특 별 회 계	26,202,983	26,202,983

나. 삭 감 액 : 175,000천원

- 일반회계 : 175,000 천원

- 특별회계 : 0 천원

다. 총 승인액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212,613,598	212,613,598
일 반 회 계	186,410,615	186,410,615
특 별 회 계	26,202,983	26,202,983

□ 총 요구액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2,613,598	192,536,233	20,077,365	100분의 3
일반회계	186,410,615	168,986,787	17,423,828	
특별회계	26,202,983	23,549,446	2,653,537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2,613,598	192,536,233	20,077,365	100분의 3
일반회계	186,410,615	168,986,787	17,423,828	
특별회계	26,202,983	23,549,446	2,653,537	

□ 회부된 예산액 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186,410,615	168,986,787	17,423,828
세	자 체 수 입	48,808,296	47,689,081	1,119,215
	지 방 세	29,482,130	29,045,155	436,975
	세 외 수 입	19,326,166	18,643,926	682,240
	의 존 수 입	137,602,319	121,297,706	16,304,613
입	지 방 교 부 세	60,339,500	57,166,500	3,173,000
	지 방 양 여 금	21,552,005	19,472,647	2,079,358
	조 정 교 부 금	8,093,255	6,443,255	1,650,000
	보 조 금	47,617,559	38,215,304	9,402,255
	지 방 채	0	0	0
합 계		186,410,615	168,986,787	17,423,828
세	경 상 예 산	47,177,453	44,992,072	2,185,381
	인 건 비	21,530,877	19,960,754	1,570,123
	경 상 적 경 비	25,646,576	25,031,318	615,258
	사 업 예 산	129,934,538	116,083,681	13,850,857
	보 조 사 업	95,809,946	82,957,526	12,852,420
	자 체 사 업	34,124,592	33,126,155	998,437
출	채 무 상 환	1,468,526	1,468,526	0
	지 방 채 상 환	1,248,457	1,248,457	0
	채 무 부 담 행 위 상 환	220,069	220,069	0
	예 비 비 등	7,830,098	6,442,508	1,387,590
	예 비 비	1,737,116	1,860,905	△123,789
기 타	6,092,982	4,581,603	4,511,379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26,202,983	23,549,446	2,653,537
세입	지방세	0	0	0
	세외수입	20,797,276	18,649,364	2,146,912
	경상적세외수입	6,614,355	6,102,015	512,340
	임시적세외수입	14,181,921	12,547,349	1,634,572
	지방교부세	0	0	0
	지방양여금	0	0	0
	조정교부금	0	0	0
	보조금	5,406,707	4,900,082	506,625
	국고보조금	4,245,184	3,909,184	336,000
	시·도비보조금	1,161,523	990,898	170,625
합 계		26,202,983	23,549,446	2,653,537
세출	경상예산	3,824,525	2,825,516	999,009
	인건비	781,792	781,792	0
	경상적경비	3,042,773	2,043,724	999,009
	사업예산	12,930,414	11,825,156	1,105,258
	보조사업	6,077,231	5,546,981	530,250
	자체사업	6,853,183	6,278,175	575,008
	채무상환	5,892,136	6,718,378	△826,242
	지방채상환	5,892,136	6,718,378	△826,242
	채무부담행위상환	0	0	0
	예비비등	3,555,908	2,180,396	1,375,512
예비비	2,886,789	1,916,072	970,717	
기타	669,119	264,324	404,795	

□ 승 인 액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승 인 액	비교증감
합 계		186,410,615	186, 410,615	
세	자 체 수 입	48,808,296	48,808,296	
	지 방 세	29,482,130	29,482,130	
	세 외 수 입	19,326,166	19,326,166	
입	의 존 수 입	137,602,319	137,602,319	
	지 방 교 부 세	60,339,500	60,339,500	
	지 방 양 여 금	21,552,005	21,552,005	
	조 정 교 부 금	8,093,255	8,093,255	
	보 조 금	47,617,559	47,617,559	
	지 방 채	0	0	
합 계		186,410,615	186,410,615	
세	경 상 예 산	47,177,453	47,177,453	
	인 건 비	21,530,877	21,530,877	
	경 상 적 경 비	25,646,576	25,646,576	
	사 업 예 산	129,934,538	129,759,538	△175,000
	보 조 사 업	95,809,946	95,809,946	
출	자 체 사 업	34,124,592	33,949,592	△175,000
	채 무 상 환	1,468,526	1,468,526	
	지 방 채 상 환	1,248,457	1,248,457	
	채 무 부 담 행 위 상 환	220,069	220,069	
	예 비 비 등	7,830,098	8,005,098	175,000
	예 비 비	1,737,116	1,912,116	175,000
기 타		6,092,982	6,092,98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승 인 액	비교증감
세 입	합 계	26,202,983	26,202,983	
	지 방 세	0	0	
	세 외 수 입	20,797,276	20,797,276	
	경상적세외수입	6,614,355	6,614,355	
	임시적세외수입	14,181,921	14,181,921	
	지 방 교 부 세	0	0	
	지 방 양 여 금	0	0	
	조 정 교 부 금	0	0	
	보 조 금	5,406,707	5,406,707	
	국 고 보조금	4,245,184	4,245,184	
시·도비 보조금	1,161,523	1,161,523		
합 계	26,202,983	26,202,983		
세 출	경 상 예 산	3,824,525	3,824,525	
	인 건 비	781,792	781,792	
	경 상 적 경 비	3,042,773	3,042,773	
	사 업 예 산	12,930,414	12,930,414	
	보 조 사 업	6,077,231	6,077,231	
	자 체 사 업	6,853,183	6,853,183	
	채 무 상 환	5,892,136	5,892,136	
	지 방 채 상 환	5,892,136	5,892,136	
	채무부담행위상환	0	0	
	예 비 비 등	3,555,908	3,555,908	
예 비 비	2,886,789	2,886,798		
기 타	669,119	669,119		

□ 증·감액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단 체 장 제 출 예 산 액	증 · 감 액		조 정 예 산 액	증 감 내 역
장	관		삭	증		
계			175,000	175,000		
2000 사회개발비		83,838,307	175,000		83,663,307	
2400 주택및지역 사회개발		21,231,764	175,000		21,056,754	
2430 지적관리		966,704	175,000		791,704	
2431 지적관리		966,704	175,000		791,704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동문62동 불부합지 토지 매입비 173,250천원전액감 03 시설부대비 ○동문62동 불부합지 토지 매입비 1,750천원전액감
5000 지원및기타경비		4,168,127		175,000	4,343,127	
5400 예비비		2,919,670		175,000	3,094,670	
5410 예비비		2,919,670		175,000	3,094,670	
5411 예비비		2,919,670		175,000	3,094,670	
						○ 삭감액 175,000천원 전액 증액조치